

개정 전

# 광주광역시박물관·미술관협의회 정관

(광주광역시박물관·미술관협의회)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광주광역시박물관·미술관협의회” 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,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 협의체로서 ~~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~~ 기여하며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① 광주광역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
- ② 연구발표회, 학술지 및 회지 발간

개정 후

# 광주광역시박물관·미술관협의회 정관

(광주광역시박물관·미술관협의회)

2008. 4. 17 시행

2016. 4. 26 개정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광주광역시박물관·미술관협의회” (이하 “본회” )라 한다.(Association of Museums in Gwangju, 약칭AMG)

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,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의 **설립** 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 협의체로서 **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문화향유 및**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**소재** 박물관·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① 광주광역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

- ③ 광주광역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 전시 지원 사업
- ④ 전문직원에 대한 양성 및 교육
- ⑤ 국내외의 관련기관들과의 교류
- ⑥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**제5조 (수익사업)**

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 (이익의 제공)**

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**제2장 회 원**

**제7조 (회원의 자격)**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,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.

- ① 정회원 :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,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광주광역시내 박물관·미술관 또는 이에 준하는 관으로 관을 대표하는 자
- ② 명예회원
- ③ 특별회원
- ④ 준회원

- ② 연구발표회, 학술지 및 회지 발간
- ③ 광주광역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 전시 지원 사업
- ④ 전문직원에 대한 양성 및 교육
- ⑤ 국내외의 관련기관들과의 교류
- ⑥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**제5조 (수익사업)**

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 (이익의 제공)**

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**제2장 회 원**

**제7조 (회원의 자격)**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**총회**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.

- ① 정회원 :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,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의 **설립**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으로 **등록된** 광주광역시 소재 박물관·미술관 **중 준회원으로서 1년이 경과한 후 활동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기관(장)**
- ② 준회원 :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광주광역시 소재 박물관·미술관(장)

**제8조 (회원의 권리)**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~~명예·특별·준회원~~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.

**제9조 (정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
-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④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**제10조 (회원의 탈퇴)**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.

**제11조 (회원의 상벌)**
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·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**제3장 임 원**

③ 명예회원 :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
④ 특별회원 :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관(장)

**제8조 (회원의 권리)**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~~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~~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.

**제9조 (정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
-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④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**제10조 (회원의 탈퇴)**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.

**제11조 (회원의 상벌)**
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·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**제3장 임 원**

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1인
- ② 부회장1인
- ③ 이사 5인 이상
- ④ 감사 2인 이내
- ⑤ 고문 약간 명

제13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에 선출한다.
- ④ 선출된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.

제14조(임원의 해임과 사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.

제15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·부회장·이사·감사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1인
- ② 부회장1인
- ③ 이사 5인 이상
- ④ 감사 2인 이내
- ⑤ 고문 약간 명

제13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**본회의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 한다.**
-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- ③ 임원의 보선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에 선출한다.
- ⑤ 선출된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.

제14조(임원의 해임과 사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.

제15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·부회장·이사·감사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

### 제16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,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5.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8조 (회장의 직무대행)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4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20조(구분 및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한다.

### 제16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,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5.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8조 (회장의 직무대행)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4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20조(구분 및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# 제22조 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선거의결권은 타관에 위임할 수 없다.

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# 제22조 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선거의결권은 타관에 위임할 수

제23조(총회의 의결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⑤ 사업계획의 승인
- ⑥ 기타 중요사항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 제5장 사무부서

제25조 (사무국)

- ① 회장기관아 모든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.

## 제6장 ~~명예회원 · 특별회원 · 준회원~~

제26조(~~명예회원~~) ~~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협회 발전에 유공한 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명~~

없다.

제23조(총회의 의결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⑤ 사업계획의 승인
- ⑥ 기타 중요사항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 제5장 사무부서

제25조 (사무국)

- ① 회장기관에 **사무국을 두며 본회의** 모든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.

## **제6장 삭제**

**제26조(명예회원) 삭제**

~~예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~~

### ~~제27조(특별회원)~~

~~①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.~~

~~② 특별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~~

### ~~제28조(준회원)~~

~~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, 과학관육성법에 등록하지 않은 광주광역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으로 관을 대표하는 자.~~

## 제7장 보 칙

**제29조(정관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30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08년 4월 17일로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~~제27조(특별회원) 삭제~~

### ~~제28조(준회원) 삭제~~

## 제6장 보 칙

**제26조(정관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7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08년 4월 17일로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

**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** 이 정관 제 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【별지 1】 과 같다.

**제4조(창립회원)**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.

**제5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**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는 【별지 2】 와 같으며 전원 기명날인한다.

## 규 칙

### 제1호 <연회비에 관한 규칙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정관 제9조의 연회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비)** 협회비는 본회의 회원관의 회비 및 관련기관의 지원금으로 총당한다. 회원관의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. (연회비는 매년 1월 말까지 낸다.)

**제3조(금액의 조정)** 제2조의 액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** 이 정관 제 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【별지 1】 과 같다.

**제4조(창립회원)**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.

**제5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**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는 【별지 2】 와 같으며 전원 기명날인한다.

## 규 칙

### 제1호 <연회비에 관한 규칙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정관 제9조의 연회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비)** 협회비는 본회의 회원관의 회비 및 관련기관의 지원금으로 총당한다. 회원관의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. (연회비는 매년 1월 말까지 낸다.)

**제3조(금액의 조정)** 제2조의 액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【 별지 1】

직 위	성 명	주 소	임 기
회장	운영철	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82(소태동)	2년
부회장	채종기	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	2년
감 사			2년
감 사			2년
고 문			2년
고 문			2년

【 별지 2 】

성 명	주 소	날 인
우제길	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47	
이순	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35-1	
정송규	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31-6	
허달재	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5-1	